

법학전공자의 로스쿨 진학은 모순이다



김 동 훈

· 국민대학교 법대 교수

첫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는 현 로스쿨 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홍 일표 前 사법연수원장께서 귀중한 지적을 하여 주셨다(고시계 2012년 4월호 게재). 그 문제점이란 법학전공자와 비법학전공자가 동일한 기준에 의해 선발되고 동일한 교과과정에 따른 교육을 받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홍 변호사는 선발시 법학전공자에게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받지 못하게 하는 점과 법학전공자 및 비전공자를 처음부터 통합교육하는 제도의 시정을 주문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지적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데에는 이의가 없지만 해결책은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로스쿨로 전환되지 않은 학부의 법과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교원인 필자의 시각에서 로스쿨의 가장 낭비적인 측면은 법학전공자들의 학부법학교육이 로스쿨시스템에서는 전적으로 무의미해진다는 것이다. 본래 우리가 모범으로 삼은 미국식 로스쿨은 학부에 법학과정이 없는 환경에서 법학교육이 일종의 고급전문직업 교육으로서 대학원 전용과정으로 운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90개 가까운 학부의 법과대학 내지 법학과 중에서 25개학교만 학부폐지를 전제로 로스쿨로 전환하였고 여전히 60여개의 학부법학교육기관이 존재하고 있으며 로스쿨의 몇 배나 되는 법학이수자를 배출하고 있다. 그런데 로스쿨에 입학하는 학생 중 법학이수자의 비율은 2009년도 제1회 입학생은 34%였으나 갈수록 높아져 2012년 입학생 중에는 54%를 차지하고 있다. 어찌 보면 이들은 현 로스쿨 체제의 설계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불청객이라고 볼 수도 있다. 로스쿨법상으로도 일정비율 이상의 비법학전공자를 선발하라는 의무비율

만 있을 뿐이어서 법학전공자를 전혀 선발하지 않아도 어떠한 규정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다. 또 졸업생 중에서도 로펌 등은 비법학전공자들을 선호하고 있어, ‘법학 밖에 공부한 것이 없는’ 법학전공 졸업생들은 취업시장에서도 더 불리한 위치에 처하고 있다.

로스쿨에 일단 입학한 법학전공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미 공부한 내용의 복습일 뿐이다. 사실 산술적으로만 보면 학부법학교육은 로스쿨 법학교육보다 더 긴 시간에 걸쳐 더 많은 학점과 다양한 법학과목을 공부하게 되어있다. 법학공부의 기본인 민법과목만 하더라도 총칙, 물권, 채권, 가족법 등으로 나누어 이론강의만 15~20학점을 수강하고 게다가 연습이나 판례과목까지 수강하기도 한다. 이러한 학부법학과정을 충실히 공부한 학생들에게 로스쿨 강의란 일종의 압축형 복습일뿐이다. 로스쿨교육이라고 여러 가지 포장을 해보지만 특별히 색다른 내용이나 색다른 방법으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단지 다른 학부전공을 이수한 경험 등으로 이해력이 조금 증가한 상태에서 학습효과가 더 높을 수 있다는 일반적 예측만을 말할 수 있을 뿐이다.

현재 60여개의 학부법학교육기관에서는 졸업생들의 중요한 진로의 하나로 로스쿨진학을 상정하고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졸업생이 로스쿨에 진학한다는 것은 바로 4년간의 법학교육을 무위로 돌리는 선택이라는 일종의 자가당착적 현실에 직면해있다. 마치 상급학교에 진학하면 당연히 배울 것을 미리 선행학습을 하고 들어가는 것에 불과하다. 또 로스쿨에서 이처럼 장기간 선행학습을 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같이 교육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공정하기까지 하다.

학부의 2~3배나 되는 수업료를 내면서 또 3년의 황금기를 투자하면서 단지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얻기 위해 포장만 바뀐 그러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학습을 강요당해야 하는 1천여명의 법학전공자 로스쿨 입학생들을 생각하면 이러한 비효율적 낭비가 있을 수 없다. 마치 의과대학 졸업자가 다시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서 같은 내용을 다시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닌가.

결국 문제는 제도의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즉 학부법학교육기관 중 일부를 로스쿨로 전환한다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잔존기관들은 어떠한 역

할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당연히 고민하고 합당한 대책이 마련되었어야 한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학부의 법학전공자가 아무런 구별없이 로스쿨에 입학하는 낭비를 시정할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 해법으로 일본처럼 학부법학전공자는 기수자라고 하여 수학기간을 2년으로 단축시켜주는 것도 제시되고 있다.

필자는 보다 근본적인 해법으로서 법조인 선발 및 양성체제의 이원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로스쿨은 그 제도적 취지에 충실하자면 비법학전공자만을 받아들여 교육하여야 한다. 다양한 전공을 이수한 자들이 그 바탕위에 법학적 사고를 접목하여 사회의 각 분야의 전문법률가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초를 닦아주는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에 학부법학 전공자는 법학지식을 심화학습하여 전통적인 송무를 중심으로 한 영역에서 강점을 나타내는 법률가로서 성장해 나갈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이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 법률가의 자격을 얻는 길을 열어주어야 하고 가장 쉬운 길은 현행 사법시험을 인원수를 다소 줄이더라도 존치시키고 학부법학교육 이수자들에 한하여 응시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원체제는 서로 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우리 법조를 다양하게 하고 경쟁력을 높일 것이며 무엇보다 현재의 무익하고 소모적인 학부법학교육을 구제하게 될 것이다. 만일 잔존하는 학부법학교육기관들을 사법시험제도의 폐지와 함께 강제폐쇄명령을 내릴 것이 아니라면, 여전히 더 높은 비용을 차지하는 이러한 교육기관들이 본연의 존재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며 그것은 학부법학전공자들만이 응시할 수 있는 사법시험 제도를 계속해서 존치시키는 것이다. 최근 법조계 일각에서 사법시험 존치론이 다양하게 주장되는 것은 현행의 고비용 로스쿨 체제로 법조인양성체제를 단일화하는 것에 대해 우리 사회가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